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문대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034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한도 확대(정부안 등)	3

I. 개요

1. 문대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9034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문대림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3. 18.

(3) 회 부 일 : 2025. 3. 1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등이 농지·초지·산림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5년간 합계가 1억원이라는 종합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영농후계자를 육성하고 농어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증여세 면제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증여세 감면 종합한도는 2006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금액 변동 없이 유지되어 온 한편 물가상승, 공시지가 인상 등을 감안하여 증여세 감면 종합한도액을 현실에 맞게 인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증여세 감면 한도액을 현행 5년간 총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및 제133조제4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특례 적용 기한 연장 및 한도 확대(정부안 등)

현 행	개정안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제71조) ○ 영농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농지·어선·어업권·축사용지 등을 직계비속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100% 감면 ○ 적용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2027년 12월 31일(서영교의원안) - 2028년 12월 31일(이만희·주철현·이병진·추경호·윤영석의원안, 정부안) - 2029년 12월 31일(김선교의원안) - 2030년 12월 31일(문대림·서천호·윤준병·유상범·임호선 의원안)
☐ 감면 한도(제133조) ○ 5년간 감면 한도: - 1억원	☐ 감면 한도 확대 ○ 5년간 감면 한도: - 2억원(문대림의원안) - 5억원(이만희의원안)

* 주철현의원안 2025. 1. 23. 발의(의안번호 7736), 윤준병의원안 2025. 3. 10. 발의(의안번호 8766)
서천호의원안 2025. 3. 18. 발의(의안번호 9021), 문대림의원안 2025. 3. 18. 발의(의안번호 9034)
김선교의원안 2025. 3. 25. 발의(의안번호 9340), 이만희의원안 2025. 3. 26. 발의(의안번호 9356)
이병진의원안 2025. 6. 26. 발의(의안번호 11102), 이병진의원안 2025. 6. 27. 발의(의안번호 11114)
추경호의원안 2025. 8. 1. 발의(의안번호 12018), 유상범의원안 2025. 8. 13. 발의(의안번호 12154)
임호선의원안 2025. 9. 2. 발의(의안번호 12620),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윤영석의원안 2025. 9. 8. 발의(의안번호 12782), 서영교의원안 2025. 9. 8. 발의(의안번호 12789)

☐ 개정안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인 영농자녀등이 증여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동 증여세의 감면 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임.

적용기한과 관련하여, 1년 연장하는 안(서영교의원안), 3년 연장하는 안(이만희·주철현·이병진·추경호·윤영석의원안, 정부안), 4년 연장하는 안(김선교의원안), 5년 연장하는 안(문대림·서천호·윤준병·유상범·임호선 의원안)이 제시되었음.

감면한도와 관련하여서는 현행 5년간 합산 '1억원'의 감면한도를 문대림의원안은 '2억원'으로, 이만희의원안은 '5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제시되고 있음.

□ 동 특례제도는 부모가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조기이전 하도록 함으로써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인력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농가 경영의 안정을 위하여 1986년에 도입된 제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¹⁾에서는 자경농민 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민 등이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농지, 초지, 어업용 토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1억원(5년간 증여세액 합계 기준)을 한도로²⁾ 증여세를 전액 감면하도록

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④ 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하고 있음.

동 특례제도가 적용된 감면세액은 2021년도 773억원, 2024년도 476억원의 실적치를 기록하였고, 2026년도에는 543억원 수준의 조세지출이 전망되고 있음.

[연도별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모]

(단위: 억원)

연도	2021(실적)	2022(실적)	2023(실적)	2024(실적)	2025(전망)	2026(전망)
감면액	773	712	654	476	506	543

자료: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첫째, 조세감면 규모는 감소하고 있지만 경자유전의 원칙, 농·어민 이익보호라는 정책적 측면에서 제도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이러한 정책적 고려의 필요성으로 자경농민 등이 농지등을 상속하는 경우 적용되는 영농상속공제 제도³⁾의 경우 일몰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상속세제의 기본 공제제도로써 계속 운영되고 있음.

둘째, 농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자유전 원칙 유지 측면에서 증여세 감면 혜택의 계속 적용을 통해 농어업 인력의 세대교체 촉진을 계속 지원할 필요가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억원을 한도로 한다)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있음.

2024년 농가 경영주는 연령별로 70세 이상이 49만 5천 가구(전체 농가의 50.8%)로 가장 많았고, 60대는 33만 2천 가구(33.1%), 50대는 12만 5천 가구(12.9%) 순으로, 전년대비 70세 이상 경영주는 증가(+3.6%)하였으나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감소하였음.

[2024년 경영주 연령별 농가]

(단위: 천 가구, %)

구 분	계	40세 미만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2024	974 (100.0)	5 (0.5)	27 (2.8)	125 (12.9)	322 (33.1)	495 (50.8)
증 감	-25.3	-0.8	-5.7	-16.1	-20.1	17.4
증감률	-2.5	-15.4	-17.3	-11.4	-5.9	3.6

주: 증감, 증감률은 전년 대비 수치임.

자료: 통계청,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2024년 어가 경영주 또한 70세 이상이 1만 7천 가구(전체 어가의 41.9%)로 가장 많았고, 60대는 1만 5천 가구(37.2%), 50대는 6천 가구(13.8%) 순으로, 전년대비 70세 이상(+7.4%) 경영주는 증가하였으나 나머지는 감소하였음.

[2024년 경영주 연령별 어가]

(단위: 천 가구, %)

구 분	계	40세 미만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2024	40.9 (100.0)	0.4 (1.0)	2.5 (6.1)	5.7 (13.8)	15.2 (37.2)	17.1 (41.9)
증 감	-0.9	-0.1	-0.2	-0.7	-1.1	1.2
증감률	-2.1	-25.0	-6.7	-10.7	-6.7	7.4

주: 증감, 증감률은 전년 대비 수치임.

자료: 통계청,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셋째, 사후 상속시 적용되는 영농상속공제 제도와의 형평을 일정 맞추어 젊은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이 조기에 이전되도록 유도할 수 있음.

현재 자경농민 등이 농지등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영농상속공제⁴⁾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영농상속공제의 경우 일몰기한을 정하지 않은 영구적 제도로 운용되고 있고, 공제 한도도 최대 30억원으로 증여보다 유리점이 커 상속 시까지 농지 등의 이전을 이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넷째, 2006년 12월 31일 해당 감면한도 규정 신설 시 1억원으로 설정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증여세 감면한도를 물가상승분을 감안하여 개정안과 같이 감면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실질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2020년 물가를 100으로 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살펴보면, 2007년 소비자물가지수는 78.01이고 2024년 소비자물가지수는 114.18로서 그간의 물가상승분에 따른 한도액의 실질가치 하락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연도	2007	2010	2015	2020	2024
소비자 물가지수	78.010	86.373	94.861	100	114.18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2020년=100 기준

□ 다만, 아래와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감면한도의 상향은 기존 감면실적과 평균 감면액 등 고려 시 필요성이 크지 않을 수 있음.

2025년 조세특례 심층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총 24,490명의 수증자 중 53%(13,097명)는 1,000만원 미만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1억원 이상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은 비중은 4.49%(1,100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둘째, 적용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영농·영어가의 고령화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바, 젊은 후계자에게 농지 등이 조기에 이전 될 수 있도록 영농상속공제 제도와 같이 영구적 제도로 정비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61